

2021년도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3. 2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노정동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4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선임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88건(안건번호 제2021-27590호~2871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27590호~27609호(순번 1번~20번)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각각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28663호~28716호(순번 1074번~1127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3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16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1103호~1265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16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4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선임: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4쪽의 저작물명, 5쪽의 불법 사이트명, 7쪽의 블로그명, 게시자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선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불법사이트명, 블로그명, 게시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9쪽~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B, A,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선임: 금일 심의안건은 24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5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20번은 1명의 익명과 2명의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이용자들이 다수의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각각 스트리밍으로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총 55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부터 22화까지 한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각각 제공하고 있음.

(순번 5번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696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순번 17번 심의대상 게시물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50화 전체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C, B 위원: 검토 의견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선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1번~107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233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등을 웹

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한컴 오피스 2020’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2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한컴 오피스 2020’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년에 44,000원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자동인증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영화 ‘모리타니안’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23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모리타니안’을 무료로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2021. 3. 17.에 개봉한 미국영화로써, 현재 극장 상영 중임.
(게임 ‘좀비 아미 4: 데드 워’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0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좀비 아미 4: 데드 워’를 1,0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2. 4.에 출시한 PC 게임으로써, ‘STEAM’ 사이트에서 51,000원에 구매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74번~112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영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 대하여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64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074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영화 전체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2021. 3. 18.에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현재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16,400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A, B 위원: 순번 21번~1127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1번~112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27590호~28716호(순번 1번~112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8쪽부터 1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

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103호~1265호(순번 1~163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5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3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